
7. 복지 / 민간지원

7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공주시가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36,044	26,565	37,871	38,754	110,964	2,980	3,390	4,260	11,261
국 비	135,740	20,375	19,270	16,107	74,656	182	0	3,120	2,031
시·도비	27,936	3,147	4,094	7,304	9,626	122	271	448	2,924
시·군·구비	72,368	3,043	14,507	15,343	26,682	2,676	3,119	692	6,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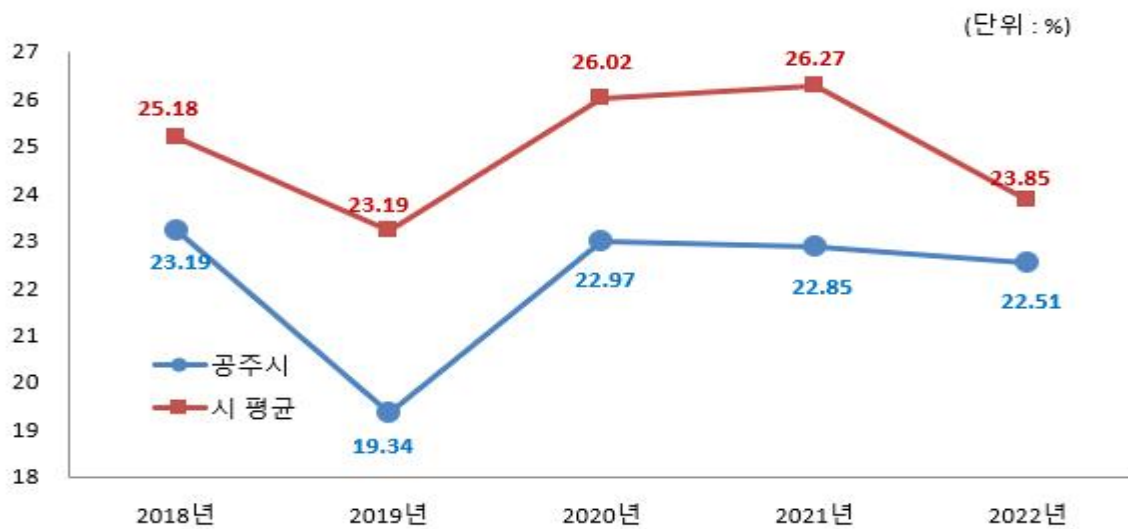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617,839	882,832	868,990	909,700	1,048,530
사회복지분야(B)	143,281	170,751	199,590	207,891	236,045
사회복지분야비율(B/A)	23.19	19.34	22.97	22.85	22.51
인구수 (C)	107,581	106,474	104,545	103,145	102,57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332	1,604	1,909	2,016	2,30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어 사회복지비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공주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091,922	81,733	7.49	
민간경상보조 (307-02)		19,289	1.77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594	0.15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3,493	0.32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23,615	2.1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9,390	2.69	
민간자본보조 (402-01)		4,352	0.4	

-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631,214	976,164	925,872	932,610	1,091,922
지방보조금(민간)	57,221	58,852	66,212	71,625	81,733
비율	9.07	6.03	7.15	7.68	7.49

※ '18 ~ '22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지 2)

7-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공주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를 참고해주세요.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별지 3)

-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gongju.go.kr/bbs/BBSMSTR_000000000798/list.do)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 (별지 4)

-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 2022.12.31. 기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요재산 전부 기재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공주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금액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2022 국악한마당	한국국악협회 공주시부	16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 (반환) 보조사업수행능력 상실 (상위기관 -충남국악협회에서 사고지부 지정)	'22.9.8.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16백만원)
2022 한국국악협회 공주시부 정기연주회	한국국악협회 공주시부	8		'22.9.8.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8백만원)
고도이미지찾기사업(한옥신축)	이○숙	120	착수기한 경과, 토지소유권 이전	'22.8.10.	교부결정 취소 (120백만원)

7-6. 행사·축제경비

- ☐ 다음은 우리 공주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048,530	8,707	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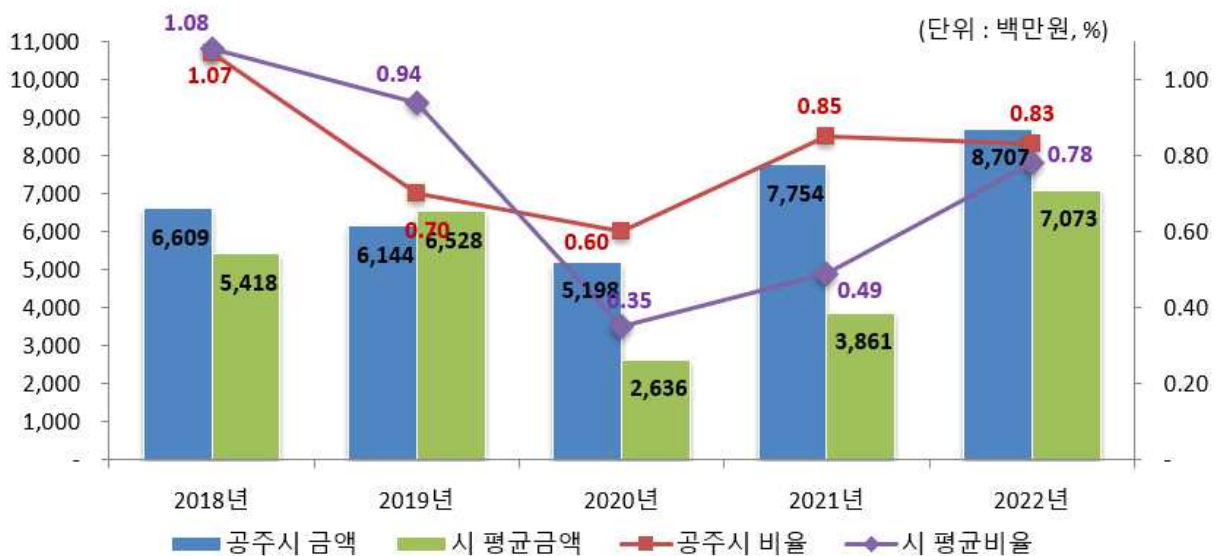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617,839	882,832	868,990	909,700	1,048,530
행사·축제경비	6,609	6,144	5,198	7,754	8,707
비율	1.07	0.7	0.6	0.85	0.83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개최되지 못했던 크고 작은 행사들이 대면으로 개최되며 전년대비 증가되었습니다.